



작 성 요 령

1.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양도일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.
2. 보고내용은 사용계획, 사용실적, 미사용액의 명세를 별지로 작성하고 그 합계액과 누계액을 각란에 기재합니다.
3. ⑦란은 부동산양도명세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부표) ⑦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4. ⑨란에는 전년도 자구계획이행보고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) <17>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